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

[시행 2022. 5. 16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32호, 2022. 5. 16., 제정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



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

[시행 2022. 5. 16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32호, 2022. 5. 16., 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연구제도혁신과), 044-202-6953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조제7호에 따른「학술진흥법」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.

- 1. 국립대학 인건비
- 2. 대학혁신지원
- 3. 전문대학혁신지원
- 4.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
- 5. 마이스터대 지원
- 6. 4단계 두뇌한국21
- 7.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
- 8.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
- 9. 학교기업 지원사업

부칙 <제2022-32호,2022.5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당해연도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(법률 제 18725호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시행일) 이후 사업기간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.
- 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